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개정(안 제2조)

나.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심의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금전·물품 그”를 “금전·물품 및 그”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운영 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이내로”를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도육성담당으”를 “지도육성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생 략)	제2조(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 음)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0년 1 2월 31일까지</u> 로 한다.	② ----- <u>2025년 12월 31일</u>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제3조(기금의 용도)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u>각호</u> 의 재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 -- <u>각 호</u>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 연하는 <u>금전·물품 그</u> 밖의 재산	4. ----- ----- <u>금전·물품 및 그</u> -- --
제2장 <u>운영 위원회</u>	제2장 <u>기금운용심의위원회</u>
제6조(구성) ① (생 략)	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u>이 내</u> 로 한다.	② ----- ----- <u>이 내</u> 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 <u>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 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u>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u>지도육성담당</u>으로 한다. <u><신 설></u> <u>제3장 보칙</u> <u><신 설></u> <u>제11조</u> ~ <u>제14조</u>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지도육성담당주사</u> -----. <u>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u> <u><삭 제></u> <u>제3장 보칙</u> <u>제12조</u> ~ <u>제15조</u> (현행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 발생(안 제1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지급을 위한 세출 예산이 약 500,000원 정도로 예상됨
- 산출내역 : 100,000원 × 5명 × 1회 = 500,000원
- ※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70,000원(기본) + 30,000원(2시간 초과)

4. 작성자

농촌지원과 지도육성담당 한창원

소 관 부 서		농촌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장 상 용
	담 당	이 옥 희
	담 당 자	한 창 원 (480-4223)